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5-23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누901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7구합55534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3. 22.
판 결 선 고	2018. 4. 12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6. 2. 4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[표] 기재 각 취득세(가산세 포함, 이하 같다)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5-23

1.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(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).

2. 고쳐 쓰는 부분

가. 제1심판결서 이유 23쪽 4~6줄의 "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… … 받아들이기 어렵다."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또한 갑 제68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AB이 시행하고, B이 시공한 F도시개발구역 내 CB 구역의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7. 1. 17. 사단법인 [redacted]협의회장 명의의 '녹색건축인증서'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, AB과 B이 단순히 참조용으로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녹색건축인증 관련 서류를 원고와 무관하게 설계사무실을 통하여 확보한 다음 이 사건 만경빌딩에 비치하였을 뿐이라고 선뜻 수긍되지 않는다.』

나. 제1심판결서 이유 24쪽 밑에서 1줄부터 25쪽 10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④ 원고는,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Q 건물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(위 시행규칙이 2014. 1. 1.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에 취득한 이 사건 제1토지 관련) 내지 등록대상 사업장(위 시행규칙이 위와 같이 개정된 후에 취득한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 관련)에 해당하여야 하는데, 이 사건 Q 건물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지 않고, 원고가 위 건물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은 이상 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5-23

건물은 등록된 사업장 내지 등록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.

그러나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이나 전입 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,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.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이나 대도시 내로의 법인 전입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본점으로의 사업자등록 내지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하지 않았지만, 실질적으로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된 사무소를 대도시 내에 설치하거나 대도시 내로 전입시킨 후 5년 내에 한 부동산 취득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6두2503 판결 취지 참조).

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(2014. 1. 1.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위와 같이 개정된 것) 제6조에 정한 '사무소 등'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정한 '법인, 사무소, 사업장' 중 법인을 제외한 '사무소, 사업장'에 관한 규정임이 문언상 분명한데, 법인의 설립이나 전입은 곧 본점의 설치 내지 전입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. 결국 위 개정 전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한 '사무소 등'에는 본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, 위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규정은 원고 본점의 설치 내지 전입 후의 부동산 취득이 문제되는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.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Q 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.』

3. 결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5-23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문용선

판사 문주형

판사 이수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5-23

[표]

과세물건		취득세	지방교육세	농어촌특별세
[redacted] 토지	본세	317,804,800	63,310,720	125,120
	가산세	102,619,160	14,111,950	27,880
	소계	**420,423,960**	**77,422,670**	**153,000**
[redacted] 토지	본세	446,711,260	89,342,250	-
	가산세	108,729,510	12,811,670	-
	소계	**555,440,770**	**102,153,920**	-
[redacted] 건물	본세	182,965,010	41,892,630	4,389,890
	가산세	31,030,860	2,915,720	305,530
	소계	**213,995,870**	**44,808,350**	**4,695,420**
합계		**1,189,860,600**	**224,384,940**	**4,848,420**